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0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 이에 본 계획의 제출을 위한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립내용: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나. 수립목적

- 인구 구조의 변화로 농어촌지역은 초고령화 사회, 독거노인문제,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만성질환관리, 예방적 건강관리나 건강증진사업에 주안점을 두었고 의료취약의 현안문제로 보건의료원이 해결해야 할 전문의 진료나 응급의료체계구축, 전 국민 건강검진 수행등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 하였음. 평생건강은 건강생활 실천의 행태개선이 중요하므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참여하여 체감되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의 내실화와 필수사업의 집중으로 정리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욕구를 수용하고 국가보건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하고 보

건복지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 하였음.

다. 주요사업 목표

- 응급의료체계 상 의료 취약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야간이나 휴일 등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의료 체계이며, 의료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은 응급의료기금의 예산을 지원 받아 의료 취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응급 의료 기관으로 승격을 추진.
- 건강검진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뇌졸중, 치매, 학교 건강검진의 확대, 말기 암환자 관리, 암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 등의 의료체계가 요구되어. 우리군은 조기 검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영상초음파장치, 내시경 등을 구비 하였으나, 유방촬영장치, UG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등의 암 검진을 위한 필수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암 검진 대상자가 대부분 타 지역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어 국비 보조를 바탕으로 검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할 것임.
- 보건지소 중심의 재활치료실 운영을 4개소에서 다른 보건지소(1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읍.면단위 거동불편 재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노인성 질환으로 사업을 집중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
-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뇌졸중, 치매, 말기암, 순환기질환, 호흡기질환등의 만성질환자 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요양급 병실 운영을 위한 특수병동 설치 추진.
- 기후 온난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 체계를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

라. 중점사업 내용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 지역실정에 맞는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문제 해소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진료사업
 - 응급의료 진료강화와 암 검진등 종합검진센터 운영

마. 기타 지속사업 추진

- 위 중점사업을 제외한 지역보건법 제9조의 모든 업무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활용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 1항(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관계법령

地域保健法

第3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등)

①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地域住民, 保健醫療關聯機關·團體 및 專門家の 의견을 들어 당해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市·郡·區議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